「안전투자 혁신사업 - 위험공정개선」

`23년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공단 승인 기준 안내

□ 목 적

○ 안전투자 혁신사업 참여 사업장 중 **위험공정개선 사업계획 변경** 사유별 **승인 기준**을 **마련**하여 신청 투자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

□ 변경 승인 요건 안내

○ 개선 설비 종류 변경 외 지급방식, 설비 대수(모델) 변경 가능

- (보조금 지급방식) 금융보조방식으로 변경할 경우, 재정평가에 이상이 없어야 함
- (개선설비) 설비종류 변경(기타 설비 포함) 이나 제외는 사업계획서·현장평가 내용과 상이하고 위험요인 미개선 사례가 발생함 따라 변경 승인 불가

<예시 참조>

구 분	변경 요청 내용		승인	불승인	사 유
지급방식	▸ 직접보조 ↔ 금융보조방식		○		-
	▸ (금융보조방식) 리스 ↔ 할부		○		
개선설비	설비종류 변경이 없는 경우	▸ 설비대수 변경	○		
		▸ 설비모델 변경	○		
		▸ 설비금액 변경	○		
	설비종류(기타설비 포함) 변경 또는 제외 시			○	**사업계획, 현장평가 내용과 상이하고 제출했던 유해·위험요인이 미개선 되므로 승인 불가**

< 사업계획 변경 승인 예시 >

보조결정	
설비	대수
프레스	2대
전단기	2대
절곡기	2대
기타 (기타로 신청한 모든 설비)	1건

➡

예시1	설비	대수	승인 사유
변경 승인	프레스	1대	· 설비 종류에 변경이 없고, · 신청 대수만 변경 → 변경신청 승인
	전단기	1대	
	절곡기	1대	
	기타	1대	

➡

예시2	설비	대수	불승인 사유
변경 불승인	프레스	1대	· 설비 종류 변경 · 위험기계 제외로 우선점수 하락 · 기제출한 위험요인 미개선 → 변경신청 불승인
	산업용로봇	2대	
	원료공급기	2대	
	기타 (기타로 신청한 모든 설비)	제외	

⇒ 사업계획 · 현장평가 내용과 상이한 투자계획 변경은 승인 불가